

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[별표 10] <개정 2016. 5. 31.>

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(제61조제2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징금 금액
1.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	법 제67조제2항제2호	2억원 이내
2.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 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자가전기통신 설비를 운용한 경우	법 제65조제4항 전단	10억원 이내
3.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67조제2항제1호	6억원 이내